

제183회 국회

국회 본회의 의회의록

제 13 호

국회 사무처

1997년 3월 1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
3.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5. 근로기준법안(위원회안)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위원회안)
7. 노동위원회법안(위원회안)
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위원회안)
9. 재외동포재단법안
1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
11. 자격기본법안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
13.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14.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15.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 인사 2
- 의원 선서 및 인사 3
- 9. 재외동포재단법안(정부 제출) 4
- 1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정부 제출) 5
- 11. 자격기본법안(정부 제출) 5
-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정부 제출) 5
- 13.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 14.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정부 제출) 7
- 15.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박관용·서상목·조웅규·안상수·조순승·김중배·김선길·이부영·이미경 의원 외 34인 발의) 8
- 1.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 3.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 5. 근로기준법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 7. 노동위원회법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
o 휴회의 건(의장 제출)	13

(20시04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정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
 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예정했습니
 다. 이런데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안의 노동관계법을 처리하
 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30분 또는 1시간 계속 이
 렇게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사실 의장으로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느긋하
 게 회의 시간을 연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었
 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하
 면서도 위원회의 사정이 금방 될 듯 될 듯 하면
 서 자꾸 그렇게 천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는 관계 상임위원장에게도 호소를 하
 고 부탁을 했습니다. 299명의 국회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정도
 감안하면서 의견을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법사위원회에서 계속 자꾸 수정과 또
 다른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를 천연할 수가 없어서 우선 오늘 상정
 될 수 있는 안건을 먼저 가지고 나와서 처리하기
 로 해서 회의가 8시에 개의된 점 다시 한 번 이
 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정부위원 인사**

(20시09분)

○**의장 김수한** 오늘 새로 당선되신 의원 두 분
 의 선서가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한 분 의원이 아
 직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해서 먼저 지난번 새로
 임명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건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고건** 새로 국무총리에 임명된 고건
 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의 국무총리 임명을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이 시점에
 내각을 이끄는 중책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
 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
 긋나지 않도록 미력이나마 온몸을 던져서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새 내각에 부여된 사명은 새삼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을 극
 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각은 흐트러진 국정을 정상궤도에 진입
 시켜 지금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를 희생시
 키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굳
 건히 다지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
 게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시급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
 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얻어 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내각은 지성감민(至誠感民)
 의 자세로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으로 이끌어 주
 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저의 인사에 대
 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강경식 부총리겸재정경제
 원장관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강경식** 이번에 경제
 부총리 및 재정경제원장관의 중임을 맡게 된 강
 경식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바로잡아 가는 막중한 소
 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서 나라 경제를 살려 가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강운태 내무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강운태 이번에 내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강운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어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데 성심성의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 하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최상엽 법무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최상엽 법무부장관 최상엽입니다.

매우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는 엄정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 송태호입니다.

저희 문체부가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종교·청소년·관광 이 분야가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충고와 격려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 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임창렬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통상 산업 행정을 충실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듯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 이환균입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건설교통부를 맡고 보니까 저의 능력에 비해서 어깨가 대단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대도시 교통난 해소 문제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 개발문제 이러한 점에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원래부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권숙일 과학기술처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권숙일 이번에 과학기술처를 맡게 된 권숙일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국가과학 발전이 우리나라 장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로서 저의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박상범 국가보훈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상범 국가보훈처 업무를 맡게 된 박상범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 하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원 선서 및 인사

(20시1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조한천 의원, 이태섭 의원 이상 두 분으로부터 의원 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기립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천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3월 10일
국회의원 조한천
국회의원 이태섭

○의장 김수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차례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한천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천 의원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3월 5일 인천 서구의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한천입니다.

미려한 저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인천 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발전과 나라 발전에 저의 모든 노력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 국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이태섭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섭 의원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여러 선배님들과 더불어 국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6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모처럼 선서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한참 우여곡절 끝에 이 시간에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보다 15대 국회에 1년 먼저 참여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모두 선배님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을 선배 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15대 국회는 다른 어느 국회보다도 중요한 국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21세기를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 또 우리나라가 실제로 선진국가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지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민들에게 여야를 떠나서 희망을 주고 화합의 정치를 보여 주는 그러한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에 조그만 힘이나마 보탬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먼저 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9. 재외동포재단법안(정부 제출)

(20시2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재외동포재단법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김도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장대리 김도연 통일외무위원회 김도연 의원입니다.

재외동포재단법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96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안에서 한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문화 홍보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0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96년 12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여 96년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재외동포의 정의 부분을 2개의 호로 나누어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재외동포라 함은 첫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둘째,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로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6조에 재단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4조에 재단 설립 전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제기된 사항 즉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사업은 동포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일민단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재단의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재외동포재단법안 심사보고서

(통일외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수한 그러면 재외동포재단법안에 대해서 통일외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정부 제출)

11. 자격기본법안(정부 제출)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정부 제출)

(20시2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직업교육훈련촉

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자격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한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서한샘 교육위원회의 서한샘 의원입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 자격기본법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제정 법안은 1996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과 자격기본법안은 수정 의결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운영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직업훈련교육 기본계획과 그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인적, 물적 자산과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당해 직업교육훈련을 다룰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국무총리 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설치,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촉진을 위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였고,

둘째, 당해 직업교육훈련을 다른 직업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제한하였고,

셋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은 주요 사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 권한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격기본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원화하는 등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국가는 자격제도의 다양성 확보와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자에게는 국가자격 취득 시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고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그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한도 내에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격에 대한 정의와 성격을 명확하게 하였고,

둘째, 정규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일정한 국가자격 취득 시 검정과목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폐지신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공인 민간자격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른 민간자격 관리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넷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민간자격 공인을 당연히 취소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의 양도와 폐지의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와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 개발사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하고 그 조직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에 관련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은 산업인력을 총괄하는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자격기본법안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에 대해서도 주관 부서와 관련한 법체계의 일관성 등을 지적하는 등의 의견 제시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자격기본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그러면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격기본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3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3항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이강희**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은 96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현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술자격의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민간 분야에서도 민간 자격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해 왔던 민간 분야의 기술자격검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6일 제14차 우리 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원안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수한** 그러면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정부 제출)

(20시3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4항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우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황우여**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우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률안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사업기금

법에 의하여 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이웃돕기성금 모금과 그 관리체계를 지양하여 위 법률을 폐지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 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단체의 주도로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의 중앙공동모금회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을 연중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하여는 전국 공동모금회가 모집계획을 조정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모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성된 재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위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1996년 11월 2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에서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996년 12월 16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모금된 재원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배분의 기본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동모금회의 이사의 선임원칙도 법률에 명시하여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대표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모집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동모금회의 모집비용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자구 심사 내용을 포함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박관용·서상목·조용규·안상수·조순승·김종배·김선길·이부영·이미경 의원 외 34인 발의)
 (20시4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5항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장대리 이신범 통일외무위원회 이신범 의원입니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97년 2월 28일 박관용 의원 외 4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만은 지난 1월 11일 중 저준위 핵폐기물 20만 배럴을 반출하여 북한지역에 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핵폐기물은 비록 그것이 중·저준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지역으로 반출될 경우 한반도 전체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대만의 핵폐기물이 북한지역으로 반출되어 한반도가 국제적 핵폐기물 처분장화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우리 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대만과 북한에 대하여 동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3월 5일 제1차 위원회 및 3월 7

일 제2차 위원회에 이 결의안을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등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린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와 우리세대와 우리 다음 대를 이을 후계세대들을 위해서도 환경은 보호·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핵폐기물은, 그것이 비록 중·저준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10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그 방사능의 위험이 지속된다는 심각성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핵폐기물은 그것을 생산한 나라 안에서 저장·처리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 유념하면서, 금번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 기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의 환경을 침해해도 좋다는 이기적 발상의 결과로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임을 지적하고,

EU는 이미 1989년에 로메 협약으로 핵폐기물을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연안 국가들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여 경제·기술적으로 선진한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후진국으로 핵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선언한 것을 환기시키며,

북한의 핵폐기물 반입 기도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민족의 이익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우리의 인식을 천명하고,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제반 남북협력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면서, 그리고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출계획의 중지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보다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선린관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만 당국은 핵폐기물을 북한에 반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우리는 북한 당국이 오늘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만으로부터는 물론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핵 쓰레기를 반입하지 말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한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그러면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통일외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관계법안을 법사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동법의 심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아무래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분 내지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9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시간이 조금 예정보다 늦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 근로기준법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 노동위원회법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근로자참여및증진에관한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근로기준법 폐지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근로기준법안, 의사일정 제6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조정법안, 의사일정 제7항 노동위원회법안, 의사일정 제8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금규 위원장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 이금규 환경노동위원장 이금규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의 폐지법률안과 근로기준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노동위원회법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이상 4건의 위원회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의 8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노동관계법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7차례의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관계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의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하여 여야 간에 단일안을 마련하고 제183회 국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등 4개 법안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등 4개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4개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난해 12월 26일 처리절차의 유·무효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4개 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국가경제발전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한 노동관계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근로기준법안은 첫째, 고용관계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를 규정하되 2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근로시간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취업 규칙에 의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서면합의에 의한 1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되 1일 최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기존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은 첫째,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기업단위는 허용하되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고,

둘째, 노조전임자 임금은 그 지급을 금지하되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하도급도 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

넷째,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 한편 노동조합은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노사 자율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시내버스는 2000년 말까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하여 공익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은 중앙노사협의회에 정부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제, 사회정책과 관련한 주요 노동문제에 대한 노사정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7년 3월 10일 제5차 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등 4개 법안과 근로기준법안 등 4개 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근로기준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노동위원회법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수한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권오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8개의 각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3당이 합의한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결정하면서 작년 12월 26일 날치기 통과 이후 우리 국가와 경제가 처한 어려움과 노동계와 재계의 절박한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아울러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애쓰신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협상을 맡았던 3당 지도부 및 의장님의 고충과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토의와 이해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안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민주당이 이제까지 주장해 온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반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날치기 통과된 노동관계법 청산에 대한 절차 문제입니다.

날치기 법안을 원천무효화하고 재심의하느냐 그대로 인정하고 재개정하느냐를 두고 지루한 살바 싸움 끝에 3당은 오늘에야 오랜 역사를 지닌 기존 법안 자체를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날치기된 법적행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부정이자 강경한 처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분의 대상범위를 무원칙하게 확대함으로써 날치기 과오에 대한 교묘한 물 타기를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 조치는 날치기 과오를 시인하지 않으려는 여당과 연말 대선을 향한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야당 간의 주고받기식의 흥정으로서 의정사상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노동관계법과 마찬가지로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 등 여타 법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3당에 묻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은 폐지되고 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날치기 개정안에 대해서만 원천무효화 되고 재심의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날치기에 의한 의정과피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오늘 상정된 노동관계법 제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당론이나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무원칙하고 편향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개정안 도출과정이 원칙에 입각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보다는 여야 3당의 재계와 노동계에 대한 눈치 보기와 주고받기 식 정치적 협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신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점을 기본 명제로 해야 하고 이해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중립적 입장에 선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누차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법안은 우선 교원·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완전 배제되어 국제수준의 노동권 신장이라는 명제에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마저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제2의 전교조 사태가 예상되어 교육계의 엄청난 파문과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적 권리가 또다시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교원 및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배제한 것은 공무원과 교원들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이들의 민주적 역량을 무시한 행위로서 이는 단적으로 노동관계법을 보는 기존 정치권 및 정부의 시각이 얼마나 편향된 것인가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와 냉전시대의 권위주의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국제교원노조총연맹이 ILO에 한국과 케냐를 교원의 단결권 불인정문제로 제소한 사실에서 보듯이 노동법에 있어서는 한국이 OECD 국가들처럼 최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정되는 노동관계법 내용을 대별해 보면 재계에서 요구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 등 3제와 무노동 무임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비록 일부 조항에서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나 재계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요구한 복수노조 인정, 정치활동 참여 보장, 제삼자 개입금지 삭제 등 3급해제 문제는 반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타 법에 의해 실제 금지당하고 있어 국제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제정안은 노사자율과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명제를 포기한 채 3당 간 정치협상으로 도출된 노동관계법 폐지 및 제정안에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공동선 극대의 원칙, 참여와 협력의 원칙, 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 교육 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원칙 등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밝힌 신노사관계 5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애 다시 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0인, 기권 5인으로써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써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0인, 기권 7인으로써 근로기준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써 노동위원회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극복하며 국민적 관심사인 노동관계법을 마침내 여야의 합의로써 절대다수로 의결하였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노사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내를 갖고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합일점을 도출해냄으로써 국민에게 의회정치의 제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음은 매우 의의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야 의원 여러분,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이궁규 위원장을 비롯한 동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에 대해서 의장으로서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새 노동법의 취지를 살려서 지금부터 노와 사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반목적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로서 국가경제의 회생과 안정을 다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호소하는 동시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동법 통과를 계기로 노사협조체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적 힘을 결집시켜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출)

(22시13분)

○의장 김수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차 본회의는 3월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산회)

○출석 의원 수(235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고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강경식
내무부장관	강운태

법무부장관	최상엽
교육부장관	안병영
문화체육부장관	송태호
통상산업부장관	임창렬
환경부장관	강현욱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
노동부장관	진념
건설교통부장관	이환균
과학기술처장관	권숙일

○출석 정부위원

국가보훈처장	박상범
외무부차관	이기주
통상산업부차관	한덕수

【보고사항】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행정	조한천	새정치국민회의	1997. 3. 10
통상산업	이대섭	자유민주연합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건설교통	이의익	자유민주연합	1997. 3. 4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어준선	환경노동	재정경제	자유민주연합	1997. 3. 6
이양희	재정경제	환경노동	"	
박신원	통상산업	내무	자유민주연합	1997. 3. 10
이정무	내무	통상산업	"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이원범 (건설교통)	구천서 (통상산업)	자유민주연합	1997. 3. 8
정보	권노갑	천정배	새정치국민회의	1997. 3. 10

○교섭단체 가입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조한천	새정치국민회의	1997. 3. 6
이대섭	자유민주연합	1997. 3. 8

○의안 제출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3월 4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통상산업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근로기준법 폐지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폐지법률안

노동위원회법 폐지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근로기준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노동위원회법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
 (이상 8건 3월 10일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3월 10일 의장 제출)
 3월 11일~3월 15일(5일간)

○의안 심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
 (1996년 11월 18일 정부 제출)
 (1996년 12월 10일 교육위원장 보고)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1996년 11월 18일 정부 제출)
 (1996년 12월 14일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
자격기본법안
 (이상 2건 1996년 11월 1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996년 12월 10일 교육위원장 보고)

재외동포재단법안
 (1996년 11월 5일 정부 제출)
 (3월 7일 통일외무위원장 보고)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2월 28일 박관용·서상목·조웅규·안상수·조순승·김종배·김선길·이부영·이미경 의원 외 34인 발의)
 (3월 8일 통일외무위원장 보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
 (1996년 11월 19일 정부 제출)
 (3월 5일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수정 의결

○청원 제출

무각출노령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
 (1997년 3월 6일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115-206 황진수로부터 김허남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3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부천시 자동차 관련시설 임대공급에 관한 청원
 (1997년 3월 6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68-23 윤석홍으로부터 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토지소유권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1997년 3월 7일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6동 101호 정성진으로부터 한호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군 식료품의 단체수의계약 환원 및 지속에 관한 청원
 (1997년 3월 8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4-10 동남O/T 303호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재섭 외 11인으로부터 이용삼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대만정부의 핵폐기물 북한 반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질문서
 (2월 14일 이미경 의원 제출)
정보화교육 체계정비와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질문서
 (2월 14일 장영달 의원 제출)
 이상 2건 2월 15일 정부에 이송
김현철 등 출입국 현황 및 한보철강 부도와 관련 피의자에 관한 질문서
 (2월 19일 조순형 의원 제출)
한보철강의 정부 지원에 관한 질문서
 (2월 20일 조순형 의원 제출)
 이상 2건 2월 20일 정부에 이송
지하철 5호선 부실공사 의혹에 관한 질문서
 (2월 22일 강성재 의원 제출)
 2월 24일 정부에 이송
축산물의 군납 및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건설 계획에 관한 질문서
 (2월 26일 정석모 의원 제출)
 2월 27일 정부에 이송
서경원 방북사건과 관련 김대중 총재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한 질문서
 (2월 28일 김옥두 의원 제출)
자치경찰제 도입·각 부처별 지방이양·개정검찰청법 헌법소원 등에 관한 질문서
 (2월 28일 정균환 의원 제출)
 이상 2건 3월 3일 정부에 이송
대학교원임용제에 관한 질문서
 (3월 4일 김한길 의원 제출)
 3월 5일 정부에 이송
행정개혁방안·산업재산·국가정보화·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질문서

(3월 6일 이강두 의원 제출)

3월 7일 정부에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월 26일 정부 제출)

김현철 등 출입국 현황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월 27일 정부 제출)

대학교원임용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대만정부의 핵폐기물 북한 반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정보화교육 체계정비와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2월 28일 정부 제출)

한보철강의 정부 지원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3월 6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보궐선거 당선인 결정 통보

3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한천·이태섭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었다
는 통지가 있었음.